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직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1천명 이상
→ 500명 → 300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서비스뿐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재취업활동도 선택 시 사업주가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재취
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을 개선함

3. 주요내용

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14조의2)

나. 기업이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별도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을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중(2026. 5. 29. ~ 7. 8.)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1천명”을 “300명”으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라 한다)가 직업훈련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2. 근로시간의 단축
3. 휴가 부여
4. 비용 지원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500명 이상인 사업주 : 2027년 7월 1일
2. 300명 이상 499명 이하인 사업주 : 2029년 7월 1일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 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u>1천명</u>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 ----- ----- ----- ----- ----- -- <u>300명</u> ----- ----.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생략)	제14조의4(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라 한다)가 직업훈련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u>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u> 2. <u>근로시간의 단축</u> 3. <u>휴가 부여</u>

② 사업주는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14조의3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비용 지원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

-----.

④ ----- 제3항-----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514